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가. 발 의 자 : 박성연 의원 외 19명

나. 의안번호 : 제740호

다. 발의일자 : 2023. 05.30

라. 회부일자 : 2023. 06.01

2. 제 안 사 유

-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제도는 수도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유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으나, 1회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많은 경우 부담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가. 원인자의 신청으로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제2항 신설).

4. 참 고 사 항

가. 관련 법령 : 「수도법」

나. 예산 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5. 검토 의견

가. 개요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을 일시불로 납부해야 하는 현행 규정을 시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수도법」 제71조와 현행 조례 제2조는 수도시설 공사 시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공사 비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 조례 제8조는 부담금의 징수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일시불 징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동 조 단서와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서 분할징수에 관한 사항을 별도 규정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8조(부담금의 징수방법) 시장은 부담금을 징수할 때에는 징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일시불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비용은 별도 징수할 수 있으며 분할 징수 시 별도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8조(원인자부담금의 분할징수) 조례 제8조 단서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중 분할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은 통지예정일 전날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지원경비, 홍보비, 도로복구비 등으로 한다.

- 다만, 부담금 중 분할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은 통지예정일 전날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지원경비, 홍보비, 도로복구비 등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분할 징수(납부) 효과는 없는바, 부담금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납부 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을 것임.

<2022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내역>

(단위: 백만원, %)

부과 대상 ¹⁾	전 체	원상 복구비	손괴예방 시설비용	누수 등 수돗물에 대한 요금	급수차 사용경비	출동 경비	측량비	시설물 이설비용 및 기타	도로 복구비	홍보비	자원 경비
		일 시 불							분 할		
금액	817	207	0	328	0	72	144	62	4	1	0
비율	100	25.3	-	40.1	-	8.9	17.6	7.6	0.4	0.1	-

부담금 징수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급수공사에 따른 부담금 규모는 총 26,916건에 1,268억원으로 1건당 평균 471만원 수준이며, 많게는 건당 11억 3천만원까지 일시 납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최근 5년간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급수공사			비고
	건수	금액	건당 평균(천원)	
2018년	7,341	30,422	4,144	
2019년	5,903	27,138	4,597	
2020년	5,274	26,170	4,962	
2021년	4,579	25,356	5,538	
2022년	3,819	17,719	4,640	
계	26,916	126,805	4,711	

-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납무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부담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²⁾한 바 있으며, 부산 등 주요 광역시에서는 분할 납부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조례에 분할납부 기간과 분할 횟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1)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177억 1천9백만원) 제외

2) 국민권익위원회는 ‘물 환경 관련 부담금 조례 불합리 개선’ 방안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21.11.4.)

<타 광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 납부 근거 현황>

도시명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분할 기간 및 횟수	2년 ³⁾ 범위내 4회까지 분할납부 가능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가능	최대 24개월까지 분할납부 가능	최대 5회까지 분할납부 가능	최대 4회까지 분할납부 가능	최대 24개월까지 4회 분할 납부 가능
제·개정 일자	2022. 2	2021. 12	2014. 6	2018.1	2014. 8	2014.11

- 따라서 안 제8조제2항과 같이 서울 시도 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시민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 됨.
- 다만, 동 조례안은 분할 납부가 가능한 내용만 규정하고 있어, 장기간 체납 발생 및 징수업무 혼선 등이 우려되는바, 부산시 등과 같이 분할 납부 기한과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부과 관련 시스템 개선 등 원활한 부담금 납부관리를 위해 시행 시기 조정⁴⁾도 필요할 것임.

3)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환경부, '10.7.2.)

제6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④(생략)

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또는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다

4) 시행일자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부칙수정 요망

[참 고]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 가. 수돗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드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설 및 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의 공사에 드는 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 다.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이하 "손괴자"라 한다)에게 그 수도공사와 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